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01. 22.

발 의 자 : 김주영 · 박 정 · 추미애
임호선 · 김태선 · 박홍배
정태호 · 이주희 · 문정복
박수현 · 서영석 · 진성준
최혁진 · 장철민 · 안호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경제 불확실성 증대,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, 플랫폼 · 고령 근로자 증가,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,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 · 성차별,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 · 다양해지고 있음

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 · 편의성 제고,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· 공정성 강화,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

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,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 · 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 · 편의성을 높이고,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

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·사용자·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,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·사용자·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% 확대함(안 제6조제2항).
- 나.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(안 제14조의4 신설).
- 다.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·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라.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50명”을 “75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70명”을 “105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3제3항 중 “제16조의2”를 “제16조의3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4(연구관)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둔다.
② 연구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고,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신청,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,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전자문서 및 전자송달·통지) ① 당사자,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, 노동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.

1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
2.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처분 결과
3.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분
4. 제23조제5항에 따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이 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문서

③ 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송달과 통지는 사건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2항의 경우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

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

⑥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⑦ 이 법에 따라 작성·제출·송달·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.

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·송달·통지의 대상,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: 각 10명 이상 <u>50명</u> 이하	1. ----- ----- <u>75명</u> -----
2. 공익위원: 10명 이상 <u>70명</u> 이하	2. ----- <u>105명</u> - -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3(조사관) ① ~ ② (생 략)	제14조의3(조사관) ① ~ ② (현 행과 같음)
③ 조사관은 위원장,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<u>제16조의2</u> 에 따른 주심위 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 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,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 <u>제16조의3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6조의2 · 제16조의3 (생략)

<신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4(연구관)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둔다.

② 연구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신청,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3 · 제16조의4 (현행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과 같음)

제17조의3(전자문서 및 전자송달·통지) ① 당사자,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

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, 노동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.

1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

2.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처분 결과

3.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분

4. 제23조제5항에 따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이 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문서

③ 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송달에 따른 통지는

사건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2항의 경우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

⑥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의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⑦ 이 법에 따라 작성·제출·

<u>제17조의3</u> (생략)	<u>송달·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.</u> <u>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·송달·통지의 대상,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 <u>제17조의4</u> (현행 제17조의3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